

의사결정수업을 활용한 어문규범 교육 방안 연구 —〈한글맞춤법〉 내용 중,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문제를 중심으로

주지연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이 연구는 2017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I. 서론
- II.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와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활용 가능성 모색
- III. 어문규범과 의사결정수업 모형
- IV. 결론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의사결정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어문규범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어문규범이 언어 공동체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체계상 정합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의사결정의 결과임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과 교육에서 주로 활용되어 온 의사결정수업 모형을 참조하여 어문규범 교육에 활용할 것이다.

어문규범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정한 발음/표기 정보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규범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어문규범 교육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특정한 언어 발음/표기가 일정한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규범적 정보는 선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어문규범 내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

만, 어문규범이 절대적 지식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결과로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국어 어문규범 중 특히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수업을 활용한 어문규범의 교육 방안과 내용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어지는 II장에서는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그것의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이어 III장에서는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활용 방안을 제안한 뒤, IV장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II.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와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활용 가능성 모색

1.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

어문규범 교육은 학습자를 수동적인 지식 주입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능동적, 자기주도적 주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어 왔다. 그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ㄱ. 지식 주입형 교육

ㄴ. (준)탐구형 교육

ㄷ. 의사결정형 교육

먼저 지식 주입형 교육은 학습자를 단시간에 일정한 범위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언어 사용자로 교육하는 데 유리하다. 특히 이미 국어를 읽고 쓰는 데 익숙한 모국어 화자의 경우 틀리기 쉬운 특정한 표기 목록을 교육하는 것 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김광해(1992)에서는 언어 영역 학습을 탐구

활동이 효과적인 ‘이해’ 영역과 탐구활동보다는 결과적인 지식 공급에 의해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식’ 영역으로 구별하고 한글맞춤법 교육의 경우에는 ‘지식’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준)탐구형 교육은 주로 어문규범과 관련하여 일정한 선행 지식을 참고하여 올바른 규범형을 유추하는 방식이다. 이는 문법 지식과 어문규범 적용 결과를 연계하여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어문규범 관련 탐구학습 및 평가 자료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탐구학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본고에서도 어문규범 교육과 관련된 이 교육 유형을 ‘준’ 탐구형 교육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는 학습자가 ‘올바른(정해진) 경로로’ 규범을 적용하여 ‘정해진 답(규범에서 정한 어형)’을 도출해 내도록 하기 위해 많은 제약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언어 영역에서 탐구 활동을 언어 자료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진단하여 규칙이나 원리를 도출하는 과학적 분석 과정으로 파악된다.¹⁾ 그런데 현행 어문규범 관련 탐구형 교육 자료 및 평가 자료의 경우 학습자의 역할을 스스로 자료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원리의 적용 과정을 이해하여 올바른 결론이 도출되는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다. 황시연(2014)에서는 한글맞춤법 관련 탐구학습 자료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식 산출의 경험을 하는 탐구활동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기존의 어문규범 관련 탐구학습 교육을 전형적인 탐구형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준)탐구형 교육이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의사결정형 교육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규범의 예외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입장이다. 하승희(2016: 19-20)에서는 탐구학습을 통한 한글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탐구학습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답을 찾는 과정이 중시된다. 그래서 오히려 문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탐구학습으

1) 교육과정해설서(2009: 131, 180)

로 적절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중략)...하지만 한글맞춤법을 교육하기 위한 탐구학습에서는 논란이 되는 예외적인 조항은 오히려 학생들의 규정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문규범에 대해 학생들이 ‘불신’이나 ‘혼란’을 느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비전형적인 사례를 제외하는 것이 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이성영(2012)에서도 국어교육에서 실제성이 실현난해성, 비효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교육에서 ‘가상성’의 효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본고 역시 국어교육의 전반에서 가상성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문규범이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의 교육에서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이 배제된 방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가상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조진수·소지영(2016: 197-199)에서도 어문규범 교육과 관련하여 비전형적인 사례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문규범 교육이 특정 조항이나 특정 원리를 가르치는 데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문규범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고 한다면” 학교교육에서 어문규범의 교육 내용 역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형 교육은 어문규범에 관여하는 주요 원리를 고려하여 더 적절한 표기의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어문규범을 지식 체계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체계상 정합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데서 비롯한다. 강보선(2013)에서는 맞춤법 교육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범주를 유형화 하였는데, 맞춤법 지식 교육에서 더 나아가 어문규범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능동적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2) ㄱ. 맞춤법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 ㄴ. 맞춤법을 지키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ㄷ. 맞춤법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기

ㄹ. 맞춤법의 창의적 사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우리의 관심은 특히 (2ㄷ)에 있는데, 강보선(2013: 20)에서는 “맞춤법 규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현실 언어의 모순, 사전과의 괴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맞춤법의 속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맞춤법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더 타당한 설명과 이론이 있으면 얼마든지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맞춤법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맞춤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필요할 경우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에게 맞춤법 규정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가 비판적으로 고찰한 글이나 북한의 맞춤법 규정 등, 적절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 공감하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구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에서 이를 위해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진수·소지영(2016)을 주목할 만하다. 조진수·소지영(2016)에서는 성인을 ‘학습을 통해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로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존재’로 보고 학교교육을 설계하는 ‘생애교육 관점’을 도입하여 어문규범 교육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친 국어생활에서 겪는 어문규범 관련 문제는 학교교육을 통해 얻은 어문규범 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어 주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문규범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조진수·소지영, 2016: 182)이다.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언급은, 강보선(2013)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강보선(2013: 14)에서는 원리

학습이 지식 학습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특정 항목을 보고 표음주의를 적용할지 표의주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과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구본관(2008)의 언급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구본관(2008)에서는 쉽고 효율적인 한글맞춤법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어문규범은 언어 공동체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체계상 가장 정합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언어 공동체의 바람직한 구성원을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기반한 것이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3L)을 지향한다.

(3) 이상적인 언어 공동체 구성원의 상(像) 설정과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

ㄱ. 규범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대상’으로서의 구성원

→ 지식 체계로서 어문규범 적용의 결과를 교육

ㄴ. 규범에 대한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한 규범을 준수하는 구성원

→ 어문규범 결정과 적용의 의사 결정 과정을 교육

다만 우리는 어문규범 교육에서 지식주입형 교육, (준)탐구형교육이 의사결정형 교육과 완전히 분리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의 교육 방법들은 모두 비판적 시각을 확립하고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해보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정에서 서로 조화할 필요가 있다. 조진수·소지영(2016: 190)에서도 어문규범 학습의 자기주도성을 강조하지만, “자기주도성을 실제 어문규범 교육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임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지식 체계로서의 어문규범을 넘어, 궁극적으로 스스로 어문규범 관련 의사 결정을 행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모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활용 가능성

본고는 주로 사회과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의사결정 수업 모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어문규범 교육의 목적에 맞게 변형,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는 이를 위해 의사결정 수업 모형과 관련된 논의들을 일부 소개하고, 사회과 외의 교육에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서 어문규범 교육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사회과 교육에서 의사결정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²⁾ 다양한 의사결정수업 모형이 제안되어 왔다. Engle(1960)은 사

2) 이는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절차적 지식의 교육을 강조하는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김일남·이광성(2007: 296-297)에서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더욱 중요성이 증가하는 절차적 지식을 학교교육에서 교육하기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선행 학습에서 얻는 지식이 후속학습의 적용에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전이가 있는 참 지식이어야 한다.

둘째, 학교교육의 지식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되도록 학생의 고등사고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셋째, 교과교육에서 획득할 지식은 절차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언적 지식을 생성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교과 교육 과정 수행 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한다. 수행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고 아울러 실용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수, 학습 방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과 영역을 적극 권장함은 물론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의 창출은 개별성을 전제로 하되, 방법적으로 집단에서의 교호작용을 통한 의사결정의 경험을 확보해 준다.

회과 교육의 핵심은 의사결정에 두어야 하며 보다 훌륭한 시민은 사회적으로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질에 의존한다고 하였다(이태근, 1988: 79). 주로 사회과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된 의사결정수업 모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로 한다.³⁾

(4) ㄱ. Banks(1977)의 모형

- ① 문제 제기
- ② 사회 탐구: 지식 획득
- ③ 가치탐구: 가치의 명료화
- ④ 합리적 결정
- ⑤ 지적인 사회 행위

ㄴ. Engle & Ochoa-Becker(1988)의 모형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

- ① 문제의 인식과 (용어)정의
- ② 가치의 가정에 대한 인식
- ③ 대안 인식
- ④ 결과 예측
- ⑤ 결정 도출
- ⑥ 결정의 정당화
- ⑦ 의사 결정의 임시성 인식

ㄷ. 차경수(1994)의 모형⁴⁾

- ① 문제제기
- ② 가치 문제 확인
- ③ 분석(정의의 개념과 명확화, 사실 확인과 경험적 증명, 가치 갈등의 해결, 비슷한 다른 경우와의 비교, 대안 모색과 결과 예측)
- ④ 선택과 결론

3) 본고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모형은 (4ㄴ)의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다룬다.

4) 차경수(1994)가 제시한 모형은 특히 의사 결정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도 특히 논쟁 문제의 학습을 위한 교수 단계에 해당한다.

Banks(1977)은 가장 널리 인용되는 의사결정 교수 모형 중 하나이다. 문제 제기 단계, 사회 탐구: 지식 획득 단계, 가치탐구: 가치의 명료화 단계, 합리적 결정 단계, 지적인 사회 행위 단계로 나누고, 가치 탐구 과정을 특히 강조하였다.

Engle & Ochoa-Becker(1988)는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공격 행동과 공공정책에 관련된 의사결정 교수를 위한 단계를 위와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인식과 용어의 정의 단계로 이때 개인들이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가치의 가정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로 이때의 가치들은 대안과 결과 모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작용한다. 세 번째 단계는 대안들을 인식하는 단계로 여러 제안들과 관점들을 비교한다. 네 번째 결과의 예측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중요한 것으로 꼽았다. 첫째는 어떤 결과들이 각 대안들로부터 나타나고 각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는 대안이 어느 특정한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제한할 것인가이다. 다섯 번째로 결정의 도출 단계에서는 가능한 많은 대안을 고려하고 결정해야 하고 여섯번째 단계는 결정의 정당화로 결정된 것을 이성과 증거에 의해 변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의사결정의 임시성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와 관련하여 Engle & Ochoa-Becker(1988)에서는 보충적 정보의 출현에 의해 결정 자체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성격 역시 변할 수 있으므로 완전한 결정이 존재할 수 없으며 경직된 관점이나 고정된 의견을 견지하는 것은 지적 성장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차경수(1994: 231-233)는 논쟁 문제를 학습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활동의 순서로서 교수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학자와 학습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활동을 정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교수 단계의 제시가 교수 활동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한 유형을 제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사결정수업 모형은 사회과 이외의 다른 분야의 교육에서 활용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정완·이용진(2016)에서는 기술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수업 모형을 탐색하여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기술교과의 주목표인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의 요소가 유사하므로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은 기술교과의 목표 부합에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홍정림(2001)에서는 생물 교육과 관련하여 생물학과 생명 공학의 등장으로 생물 교과과정에서 의사결정 활동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어교육의 어문규범 교육 역시 공공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활용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국어 문법 원리와 언어 정책의 공공성이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어 어문규범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III. 어문규범과 의사결정수업 모형

1. 어문규범 교육과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

우리는 앞서 어문규범을 지식 체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체계상 정합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의사결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현시점에서 어문규범에 대한 일반 언중의 오류가 적고, 국어 전문가 집단의 수정 의견 역시 미미하다면, 잠정적으로는 의사결정수업 모형보다 지식 전달을 위한 수업 모형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한글맞춤법 관련 일련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실제 언어 사용자가 쉽게 범하는 한글맞춤법상의 오류 양상과, 국어 전문가 집단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점 사이에 상당한 관

련성이 발견된다. 이는 언어사용자가 범하는 어문규범상의 오류의 책임이 오롯이 언어 사용자의 부주의함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체계적인 문제 인식을 통해 규범의 제정 경위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교육 방향일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에서는 “2014 한글맞춤법 영향 평가”의 과업 중 하나로 작성된 <한글맞춤법> 오폭기 목록을 분석하였다. 그 상위 10위까지의 목록을 발췌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순위	관련조항	내용
1	제20항	사이시옷
2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 구별
3	제18항	용언의 활용
4	제11항	두음법칙(한자어 어두 ㄹ 탈락)
5	제57항	의미 구별하여 적기
6	제10항	두음법칙(한자어 어두 구개음 ㄴ)
7	제40항	어간 끝음절 ‘하’의 준말
8	제51항	부사 끝 음절 ‘이/히’ 소리 적기
9	제35항	어간 말음 ‘ㄴ, ㄷ’와 어미 ‘나/너, 갔/갓’의 준말
10	제53항	된소리가 나는 어미

위의 목록에서 띄어쓰기의 목록은 제외되어 있는데,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에서는 띄어쓰기 오폭기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상 띄어쓰기 조항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에서 제시한 별도로 제시한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순을 상위 5위까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

순위	관련조항	내용
1	제43항	수관형사+단위성 의존명사
2	제42항	체언+의존명사
3	제42항	관형어+의존명사

4	제48항	성명+관직명
5	제41항	체언+조사

이와 관련하여 이관규·주세형·정지현(2015)의 조사 결과도 참조할 수 있는데, 이관규·주세형·정지현(2015)에서는 전국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25명을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로 표집하여 한글맞춤법 조항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한글맞춤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 한글맞춤법의 조항을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용도 조사의 결과에서 수용도가 낮은 상위 5항목은 다음과 같이 제시 되었다(이관규·주세형·정지현, 2015: 200). 수용도가 낮은 상위 5항목 중, 띄어쓰기가 3개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7) 1.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2.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3. 어간 ‘하’의 탈락 표기
4. 보조용언의 띄어쓰기
5. 사이시옷 표기

한편, 이동석·이경숙·이지현(2015)에서는 한글맞춤법 조사에 대한 전문가⁵⁾의 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한글맞춤법 조항들에 대한 수정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수정 의견이 높은 조항들은 다음⁶⁾과 같다.

-
- 5) 국어학자 10명, 언론인 11명, 출판인 11명, 교사 10명, 국어정책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글맞춤법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조사하였다.
 - 6) 이동석·이경숙·이지현(2015)에서는 총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에서 한글맞춤법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이 높은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2차에서는 1차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수정 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발췌한 부분은 1차 조사의 결과에 해당한다.

(8)	〈한글맞춤법〉 조항 중 수정 의견이 높은 조항
	• 두음법칙 (제10~12항) • 사이시옷(제30항) • 띄어쓰기(제41 - 50항) • 부사 파생 접미사 ‘-이, -히’(제51항)

위의 비교를 통해 언어 사용자가 쉽게 범하는 한글맞춤법상의 오류가 나타나는 영역과 국어 전문가 집단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영역이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가 한글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산발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며, 현행 어문규범에, 언어 사용자의 자연스러운 직관과 괴리된 부분이 체계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 역시, 지식을 주입한 뒤, 지식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책임을 학습자에게 돌리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핵심은 어문규범을 절대적 지식 체계로서 가르칠 것인가, 실례(實例) 적용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규범 체계로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행 한글맞춤법은 2015년의 개정은 문장부호 영역에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1988년 고시된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언어 현실과 언어 사용 환경 역시 상당 부분 변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한글맞춤법에 대한 교육은 더욱 후자에 초점을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설사 한글맞춤법이 현재의 언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는 이상적인 것으로 개정된 직후라 할지라도, 언어가 늘 변화하고 생동하는 실체임을 고려할 때 어문규범 교육에 의사결정의 임시성을 염두에 둔 수업이 의의를 지닌다.

본고는 Engle & Ochoa-Becker(1988)의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이 학습자로 하여금 언어 및 언어 사용자의 변화와 어문규범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돕는 수업 모형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총 7단계로 이루어진 Engle & Ochoa-Becker(1988)의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앞부분은, 다른 의

사결정 수업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 단계에 의사결정의 임시성을 인식하는 단계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면이 있다. 상황의 변화에도 불변하는 완전한 결정이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정보의 출현에 의해 결정 자체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성격 역시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 및 언어 사용자의 변화와 언어 규범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지점과 일치한다. 다음 장에서는 Engle & Ochoa-Becker(1988)의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을 활용한 어문규범 수업에서 참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해보기로 한다.

2. 의사결정 수업 모형의 활용: 의존명사의 띄어 쓰기 문제를 중심으로

1) 문제 인식과 정의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은 한글맞춤법 오타기 용례 조사 결과, 한글맞춤법 오타기 용례 중에 띄어쓰기 오타기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6)의 표로 제시한 바 있는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의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 빈도순에 의하면, 고빈도 띄어쓰기 유형별 오류의 순위 1위~3위까지가 모두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것이다.⁷⁾ 국어 사용자가 가장 높은 빈도로 오류를 보이는 것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라는 문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 (9) 문제의 인식: 국어 사용자가 가장 높은 빈도로 오류를 보이는 것은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이다.

7) 이관규·주세형·정지현(2015)에서 제시한 일반인의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용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단위 명사의 띄어쓰기였다.

한편, 추후 논의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존명사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한편, 특히 ‘단위성 의존명사’가 간혹 ‘단위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의존명사’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가치 인식

먼저, 한글맞춤법과 관련된 가치들로서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기존의 한글맞춤법의 원리 교육을 강조하는 논의⁸⁾로 구본관·신명선(2011)과 이관규(2012)를 참조할 수 있다. 구본관·신명선(2011: 291)에서 ‘독자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적는다’,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를 주요 원리로 제시하였다. 이관규(2012)에서는 1차적 원리(원인론적 원리)로 사용의 보편성과 설명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이에 의한 2차적 원리(결과론적 원리)로서 음소주의와 형태주의가 있다고 하였다. 이관규(2012: 144-147)에 의하면 사용의 보편성 원리는 사람들이 일정한 한글 표기를 많이 사용하면 그것을 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설명의 타당성 원리는 국어의 문법 규칙 등에 의한 설명적 타당성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파열음 앞의 선행 받침 자음이 무성음일 경우, 국어 된소리되기 규칙에 의해 된소리 발음임을 알 수 있으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한글맞춤법과

8) 어문규범 교육과 관련하여 원리를 강조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어 왔으나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주세형·신호철(2011: 105)의 지적, 특히 “전반적으로 어문규범 교육을 체계화한다면, 고등학교 단계는 어문규범능력의 ‘완성’ 단계이다. 이렇게 볼 때, 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원리를 탐구하고 종합하는’ 교육 내용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하겠다.”는 언급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중, 어문규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글맞춤법 전체를 꿰뚫는 원리”, “규범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통해 언어의 정확성 뿐 아니라 적절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언급이 확인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어문규범 교육이 기계적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들어섰음은 명백하다.

관련하여 제시된 가치들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0) ㄱ.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
 - 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표기하는 대로 적는다.
 - ㄷ. 설명적 타당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적는다.
 - ㄹ. 독자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적는다.

이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각각의 가치를 분석하고, 대립하는 가치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11) ㄱ.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소리와 표기의 일치는 발화 중 휴지의 유무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존명사는 선행하는 관형어와의 사이에 휴지가 개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원리에 의하면 띄어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행 국어 어문규범에서 제시하는 띄어쓰기는 발화 중 휴지의 간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데, 띄어쓰기가 애초에 음운론적 단위의 표시 기능보다는 독서의 편의를 위한 시각적 공간 확보를 목표로 한 편의상의 처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존명사 띄어쓰기와 관련된 가치 대립이 발생했을 때,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는 가치에 대한 고려

9) 한글맞춤법과 관련된 원리는 수정,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원리들 간의 위계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관규(2012: 144)에서는 1차적 원리(원인론적 원리)로 사용의 보편성과 설명의 타당성을, 이에 의한 2차적 원리(결과론적 원리)로서 음소주의와 형태주의를 제시하면서, “사실 음소주의이니 형태주의이니 하는 것은 개별 글자를 적는 방법은 될지언정, 현행 한글맞춤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론적 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사실상 원인론적 원리에 해당하는 ‘사용의 보편성’과 ‘설명’의 타당성’을 한글맞춤법의 근본 원리로 보고 있다. 한글맞춤법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위계화 하는 작업은 추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기존에 제시된 원리들 중 일부를 인용하여 논의 진행에 사용하였다.

는 다른 가치에 비하여 후순위가 될 수 있다.

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표기하는 대로 적는다: 이 원리에 의하면 만약의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붙여 쓰는 것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소극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 의존명사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앞말에 붙여 쓰는 경향이 강해질 경우 해당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에서 띄어쓰기 오류 빈도 순위 1위로 “수관형사+단위명사”를 제시하였는데, ‘사용의 보편성 원리’를 중시할 경우 이를 붙여 쓰도록 허용할 수 있다.

ㄷ. 설명적 타당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적는다: 띄어쓰기의 원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조사는 앞말에 붙여 적는 것이다. 단어 중, 조사를 제외한 것은 자립적이면서 어휘적인 언어 단위를 띄어쓰기의 대상¹⁰⁾으로 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의존명사는 비자립적이면서 어휘적인 특성을 보이므로¹¹⁾ 판단하기 어렵다.¹²⁾ 그렇다면 국어 언어 단위 중, 의존명사와 같이 비자립적이면서 어휘적인 특성을 보이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를 참조하여 어문규범 내의 일관적 처

-
- 10) 임동훈(2002)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어 띄어쓰기는 ‘단어 단위’를 주로 하고 ‘실사 위주’를 중으로 한다는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 11) 물론, 일부 의존명사가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고, 일부 의존명사(‘만큼’ 등)가 문법화 하는 등, 완벽하게 어휘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양명희(2013) 등에서 “의존명사는 조사와 달리 어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띄어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듯이 기존 학교 문법 기술 및 어문규범 제정 과정에서 의존명사가 문법적 의미보다는 어휘적 의미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을 고려한다.
- 12) 이와 관련하여 김양진(2015: 33)에서는 “원칙적으로 띄어쓰기는 문장을 편의적으로 구별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문법적 단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띄어쓰기는 필연적으로 문법적 단위와 충돌하게 된다. 한국어처럼 교착성이 높고 의존적 요소가 다양한 언어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특정 형식의 띄어쓰기의 타당성은 문법적 단위와 일치하는가에 대한 고려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언중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최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는가, 띄어쓰기 조항 내의 내적인 일관성이 있는가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리를 통한 타당성 확보를 꾀하여 볼 수 있다. 국어 언어 단위 중, 비자립적이면서 어휘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존명사와 유사한 보조용언의 경우,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¹³⁾하고 있다.

ㄹ. 독자가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적는다: 단어 단위로 띄어 쓰되, 문법적 요소가 어휘적 요소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한국어의 교착어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어휘적 요소에 붙은 문법적 요소는 붙여 쓰고, 단어 이상의 단위에 해당하는 어휘적 요소는 띄어 쓰는 것이 독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¹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존명사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단어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대안 인식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가능한 대안은 다음과 같이 목록화 할 수 있다.

(12) ㄱ.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ㄴ. 의존명사는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하다.

ㄷ.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둔다.

ㄹ. 의존명사는 앞말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둔다.

(12 ㄱ)과 (12 ㄴ)은 원칙을 정하고 세부적인 예외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는 원칙이 간결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언어 사용의 관행을 아울러 배려할 것을 지향하는 국어 어문규

13) 한글맞춤법 제5장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14) 임동훈(2002)에서는 “띄어쓰기가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 기능이 있다면 의미가 미약한 허사를 실사에 붙여 실사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였다.

범의 전체 기조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현행 한글맞춤법은 (12ㄷ)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동훈(2002)에서도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에 대해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기를 허용한 현행 규정은 단어 단위와 실사 위주라는 원칙을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현행 한글맞춤법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일부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주장하는 논의로 민현식(1994)이 있다. 민현식(1994)에서는 의존명사 중 상당수가 형태는 같지만 접미사나 조사 또는 어미의 일부로 사용되며, 이때는 붙여 써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우므로 의존명사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허용 규정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12ㄷ)은 북한 ‘조선말 규범집’의 입장에 가깝다. ‘조선말 규범집’(2010)의 총칙과,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13) ㄱ. ‘조선말 규범집’(2010)의 ‘띄어쓰기규정’ 총칙: 단어를 단위로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글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일부 경우에는 붙여쓴다.
ㄴ. ‘조선말 규범집’(2010)의 ‘띄어쓰기규정’ 제5항: 불완전명사(단위명사 포함)는 앞단어에 붙여쓰되 그뒤에 오는 단어는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역시 앞말과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둘 것을 주장하는 논의로 김양진(2015)을 들 수 있다. 김양진(2015)에서는 원칙적으로 의존명사나 보조용언 같은 의존적 요소들은 앞말에 붙여 적어 하나의 어절(최

15) 박정규(2011: 9)에서는 띄어쓰기의 세부 규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국어의 띄어쓰기 사정상, 41, 44, 48항과 같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할 뿐 아니라 42, 43, 45, 46, 47, 49, 50항과 같이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항들도 필요하고 43, 45, 46, 47, 48, 49, 50항과 같이 단어별 띄어쓰기와 병행하여 지금까지 붙여 써 온 관행도 아울러 배려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소 자립 요소)을 이루는 것을 허용하되 이러한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를 특정하여 띄어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4) 결과 예측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관형어와 의존명사 사이에 실제로 휴지가 없다는 점에서 글을 쓰는 쪽의 직관에 더 부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의존명사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경우 독자 입장에서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는 단위가 시각적으로도 구별되도록 표시된다는 점에서 편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언급으로는 임동훈(2002: 442-443)에서 “띄어쓰기가 독서의 효율을 높이는 데 그 기능이 있다면 의미가 미약한 허사를 실사에 붙여 실사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점에서 실사와 허사의 중간적 지위를 가지는 의존명사와 보조용언에 대해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을 허용한 현행 규정은 단어 단위와 실사 위주라는 원칙을 적절히 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것이나, 김양진(2015: 33)의 “독자 입장에서의 문법적 최소 자립 요소라는 개념과 필자 관점에서의 발화의 최소 자립 요소라는 개념의 충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독자 입장에서 문법적 최소 자립 요소로서의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편리하고, 필자 입장에서 발화의 최소 자립 요소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존명사는 붙여 쓰는 것이 편리한 경향이 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정

의사 결정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각각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 결정 결과에 따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결정의 정당화 단계, 결정의 임시성 인식 단계의 내용이 달라진다. 반대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결정의 정당화 단계의 내용과 결정의 임시성 인식 단계의 내용이 서로 바뀔 것이다. 여기서는 현행 한글맞춤법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규정대로 의사결정 한 것으로 가정

하고 이후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6) 결정의 정당화

한글맞춤법 총칙 1항은 “한글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한글 맞춤법 해설에서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그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고 따라서 독서의 능률이 크게 저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 ‘소리대로 적되’에 표음주의적 원리, ‘어법에 맞도록’에 표의주의적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원리 가운데 어떤 원리가 더 우위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최형용(2009)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글의 표기법이 소리 중심의 표음주의적 원리 우위의 상황에서 의미 중심의 표의주의적 원리 우위의 상황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최형용(2009: 181)에서는 또한 현재는 표의주의적 원리가 주된 위치로 승격된 것으로 파악하고 “글은 곧 독서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위와 같이 한글맞춤법의 표음주의적 원리에 비해 표의주의적 원리가 우위에 있고, 표기에서는 필자의 편의보다는 독자의 편의가 우선된다는 전제가 성립한다면, 의존명사를 붙여 쓰기보다는 띄어 쓰는 쪽을 원칙으로 정하고 일부 보완할 부분을 예외로 두는 방식이 더 우월한 선택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7) 결정의 임시성 인식

결정의 임시성을 인식하는 단계는 학습자가 규범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규범의 적용에 적절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존명사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결정은 의존명사가 가진 비자립적, 어휘적 성격으로 인하여 어느 한 방향이 전적으로 최선의 결정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언중들의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오류를 자주 범하는 것도

이 점의 연장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의존명사 관련 의사결정의 불완전성과 임시성을 인식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관련 결정의 임시성 인식을 통한 반성적 성찰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14) ㄱ. 의존명사의 문법적 성격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가 붙여 쓰기의 근거가 되는 사례

ㄴ.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방식을 택한 다른 사례

ㄴ-1. 북한의 어문규범¹⁶⁾에서는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ㄴ-2. 국어 어문규범의 역사에서도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정한 적이 있음.

ㄷ. 언어 사용자의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 빈도가 높음.

띄어쓰기는 자립적이고 어휘적인 요소(실사), 혹은 그것에 문법적 요소(허사)가 붙은 언어 단위 전체가 한 단위가 된다. 이때, 자립성-의존성을 정도성으로 파악한다면, 의존명사가 비자립적인 정도가 띄어쓰기를 할 때 간과할 수준의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해 볼 수도 있다. 이선웅·오규환(2017)에서는 의존성을 크게 형태적 의존성, 통사적 의존성, 의미적 의존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의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전형적인 의존형태소와 전형적인 자립형태소 사이의 척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선웅·오규환(2017)에서는 형태·통사 범주별 의존성 정도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다.

16) 북한의 어문규범을 종합적으로 다룬 것은 ‘조선어 신철자법’(1948), ‘조선어 철자법’(1954), ‘조선말규범집’(1966, 1987, 2010)이 있다. 그런데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서는 2000년과 2003년에 별도로 ‘조선말 띄어쓰기규범’을 발표했다. 남한에서도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서 3개 항만으로 설명했던 띄어쓰기 규범을, ‘한글맞춤법’(1988)에서는 11개 항으로 확대, 보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5: 32)에서는 “띄어쓰기의 근본 취지인 문자 생활의 효율성에 보다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15)

구분	형태적 의존성	통사적 의존성	의미적 의존성
비자립적 어근	○	-	○
접사	○	-	○
조사	○	○	○
어미	○	○	○
의존명사	○	○	○
계사	○	○	○
보조 용언	(○)	○	○
동사/형용사	×	(○)	○
관형사	×	○	○
부사	×	×	○
	○(또한, 좀, 역시, 안, 못, 잘)	○(또한, 좀, 역시, 안, 못, 잘)	○(또한, 좀, 역시, 안, 못, 잘)
명사	×	×	△

그런데 위의 표에 의하면 의존명사의 의존성의 정도가 조사, 어미, 계사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의존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어미, 계사는 모두 띄어 쓰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방식을 택한 다른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존명사를 띄어 쓰는 방식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양명희(2013: 205-206)에서는 “국어에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는 의존명사가 지닌 실사적 특성과 의존적 특성 때문에 띄어쓰기 규정을 정하는 데 변개를 많이 겪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63항에서 ‘바, 수, 줄, 터’와 같은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적도록 하고 있다가, 1946년의 한글학회 개정안에서는 의존명사를 붙여 쓰도록 한, 63항을 삭제하였다. 또 1988년 한글맞춤법(1988)에서는 42항에서 의존명사를 띄어 쓸 것을 명시하였다. 한편, 북한의 규범은 일관되게 의존명사를 앞말에 붙여 쓰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 사용자의 의존명사 띄어쓰기 오류 빈도에 따라 의존명사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은 임시성을 가질 수 있다. 아무리 글의 표기에 있어서 독자의 편의가 필자의 편의에 우선한다고 해도, 의존명사를 띄어 쓰는 처리와 관련한 필자의 불편으로 감소하는 효용이 지나치게 커서, 독자의 편리로 증가하는 효용을 압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의존명사를 붙여 쓰는 것이 적절한 처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사결정수업 모형의 사례로서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의존명사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수업 모형에 의한 교육의 효과로 기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16) ㄱ. 어문규범 내의 충돌하거나 공존하는 가치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리 위주의 이해가 가능해진다.
- ㄴ. 규범에 대한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된 규범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준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 ㄷ. 규범 이탈이나 창의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비판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IV. 결론

본고는 의사결정수업 모형이 국어 어문규범 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특히 Engle & Ochoa-Becker(1988)의 '반성적 의사결정 모형'을 국어 의존명사 띄어쓰기 교육에 적용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어문규범 교육에서 어문규범은 절대적 지식 체계

가 아니라 언어 공동체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체계상 가장 정합적이고 사회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지점을 찾아내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이다. 또한 언어사용자가 범하는 모든 어문규범상의 오류가 옳이 언어 사용자의 책임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규범 제정 과정에서 간과된 일부 가치와 관련된 체계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오히려 어문규범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의사결정수업 모형에 의한 어문규범 교육이 학습자가 i) 어문규범 내의 충돌하거나 공존하는 가치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리 위주로 이해 ii) 규범에 대한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된 규범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준수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 iii) 규범 이탈이나 창의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비판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추후 어문규범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한 기초 자료들이 축적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적인 장치들¹⁷⁾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본 논문은 2017. 11. 14. 투고되었으며, 2017. 11. 21. 심사가 시작되어 2017. 12. 11. 심사가 종료되었음.

17) 익명의 심사위원은 과제의 실제성을 높이려면 단순한 의사결정모형이 아니라 모의 어문규정 심의위원회 회의라는 가상 상황을 전제한 의사결정 과제임을 명시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보완적 장치들은 본고의 아이디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소들이다.

참고문헌

- 강보선(2013), 「한글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국어교육연구』 31, 1-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사이트주소: <http://ncic.go.kr>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 구본관(2008),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맞춤법의 인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195-232, 한국어교육학회.
-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61-29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신청어문』 20, 81-1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양진(2015), 「띄어쓰기의 성립과 어절의 개념」, 『국어국문학』 171, 5-39, 국어국문학회.
- 김일남·이광성(2007), 『사회와 의사결정수업모형 탐구』, 양서원.
- 문교부(1988), 『한글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문교부.
- 민현식(1994), 「국어 띄어쓰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4, 1-52, 숙명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정규(2011), 「국어 띄어쓰기 규정의 검토와 개선안 연구」, 『어문연구』 39(3), 441-464, 한국어문연구회.
- 서정완·이용진(2016), 「고등학교 기술·가정과 ‘기술 혁신과 발명’ 단원에서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 개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2, 108-127, 대한공업교육학회.
- 신호철·김부연·이규범(2015), 「한글맞춤법 오류기 목록 실태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 23, 63-94, 한국문법교육학회.
- 양평희(2013),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 197-223.
- 이관규·주세형·정지현(2015), 「한글맞춤법 쟁점 조항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연구」, 『문법교육』, 23, 183-207,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관규(2012), 「한글맞춤법의 성격과 원리」, 『한말연구』 30, 137-158, 한말연구학회.
- 이동석·이경숙·이지현(2015), 「한글맞춤법 조항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전문가의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문법교육』 23, 209-241, 한국문법교육학회.
- 이선웅·오규환(2017), 「형태소의 식별과 분류」, 『국어학』, 81, 263-294, 국어학회.
- 이성영(2012), 「국어교육에서 실제성과 가상성의 관계」, 『독서연구』 28, 52-80.
- 이태근(1988), 『사회과 교수법』, 교학연구사.
- 이희승·안병희·한재영(2015), 『한글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임동훈(2002), 「띄어쓰기의 현황과 과제」, 『관악어문연구』 27, 439-45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1954), 『조선어 철자법』,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66),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1988),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10), 『조선말규범집』, 사회과학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00), 『조선말 띄어쓰기규범』, 사회과학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2003), 『조선말 띄어쓰기규범』, 사회과학원.
- 조선어문연구회(1948), 『조선어 신철자법』, 조선어문연구회.
- 조선어학회(1933), 『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 조진수·소지영(2016), 「생애교육 관점의 어문규범 교육 방향 탐색」, 『청람어문교육』 57, 181-209, 청람어문교육학회.
- 주세형·신호철(2011), 「국어 어문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8, 85-11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차경수(1994), 「社會科 論爭問題의 教授模型」, 『시민교육연구』 19, 225-240,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최형용(2009), 「한글맞춤법 총칙 제 1 항과 표기의 원리」, 『한중인문학연구』 26, 167-183, 한중인문학회.
- 하승희(2016), 「탐구학습을 통한 한글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정림(2001),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STS (과학-기술-사회) 수업이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 및 STS 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 (2), 422-432, 한국생물교육학회.
- 황시연(2014), 「문법교과서에서 탐구학습의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ks, J. A. (1987), 『社會科 教授法과 教材研究』, 최병모 역,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77).
- Engle, S. H., & Ochoa-Becker, A. S. (1991), 『民主市民教育』, 정세구 역, 교육과학사(원서출판 1988).

의사결정수업을 통한 한글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한글맞춤법〉내용 중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중심으로

주지연

본고의 목적은 의사결정수업 모형을 통해, 어문규범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어문 규범은 절대적 지식 체계가 아니라 언어 공동체에서 임시로 합의된 규범이다. 국어교육에서, 어문규범 교육은 학습자를 수동적인 지식 주입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능동적, 자기주도적 주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사결정수업 모형은, 어문규범의 교육을 위한 이상적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규범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대상'이 아니라 규범에 대한 합의의 '주체'로서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는 구성원을 설정한다. 의사결정수업 모형을 통해 학습자는 어문규범의 기저에서 충돌하거나 공존하는 가치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한글맞춤법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의사결정수업 모형, 어문규범, 한글맞춤법, 의존명사, 띄어쓰기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Orthography Employing the Decision Making Model

—Focusing on the Spacing Between Bound Nouns

Ju Jiyouon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at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can be made more effective by employing the decision making model in classrooms. Orthography is not an absolute knowledge system, but a provisionally agreed norm in the language commun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orthography education is changing from placing the learner as a passive target of knowledge infusion to an active, self-leading subject. The decision making model for teaching orthography positions language users as subjects of consensus on norms, not passive objects who are expected to submit unconditionally to the norm. Through the decision making model in classrooms, learners can comprehend the principle of orthography by understanding conflicts or coexisting values at the basis of linguistic norms.

KEYWORDS Korean Orthography, Linguistic Norm, Spacing, Decision Making Model